

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- 16 호

『남원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「남원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2월 28일

남 원 시 의 회 의 장



## 남원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: 이 기 열 의원

### 1. 개정이유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과 「건축법」의 용어 정의가 상이하여 조례 해석 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문을 명확히 하고,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축사 악취로부터 주민 생활 권을 보호함은 물론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, 기준 재정의 및 신설(안 제2조)
- 나.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취지 및 내용 규정(안 제3조 제1항)
- 다.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예외 조항 기존 조문 명확화(안 제4조 제1항 제6호)
- 라. 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근거 신설(안 제4조 제2항)
- 마.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종 변경 조항 신설(안 제4조 제3항)

- 바.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조항 신설(안 제8조)
- 사. 사업추진 및 지원 조항 신설(안 제9조)
- 아. 축산악취 개선 명령 및 제재(안 제10조)
- 자.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 신설(안 별표 2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, 「건축법 시행령」

나. 그 밖의 사항

- 1) 입법예고기간 : 2023. 2. 28 ~ 2023. 3. 6 (6일간)
- 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- 3) 규제예비심사 : 해당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### 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23년 3월 6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

다. 보내는 곳 :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 
경제산업위원회

라. 문의 및 접수: 경제산업위원회(전화 : 063-620-5045)

마. 기재내용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 성명(기관,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붙임 남원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